

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5조 (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)</p> <p>①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 조의 11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자필서명, 녹취, 우편, 이메일,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</p> <p>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.</p> <p>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사본,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, 우편, 팩스, 이메일등을 통해 리스계약일 즉시 또는 10 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교부(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)해야 합니다. 다만,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실행일 이후에 교부가 가능한 문서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한 후에 리스실행일 10 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5조 (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)</p> <p>① -----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----- ----- 서명(전자서명 포함), 기명날인, 녹취----- ----- ② -----</p>	<p>금소법 제정에 따른 법령명 수정, 금소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확인방법 반영</p> <p>금소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 반영</p>
<p>제30조 (통지의무)</p> <p>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러한 통지의무를</p>	<p>제30조 (통지의무)</p> <p>① -----</p>	<p>불공정약관 변경명령에 따른 약관변경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 담하기로 합니다. <단서 신설>	----- ----- ----- . 다만,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 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.	